



일본의 미국 재보험담보 폐지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 미국 재보험모델법은 해외 수재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승인한 인정관할국가의 수재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담보 제공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음
 - NAIC는 2017년 유럽과 체결된 커버드 협정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보험담보 폐지와 관련된 조문 신설을 위한 재보험모델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는 인정관할국가와 보험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년 하계 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 국내 보험회사는 미국의 재보험담보 제공 규제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보험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 보험회사는 한미 FTA 및 국내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 물건을 수재하는 경우 담보 제공이 불필요하고 특별한 별도 규제 없이 가능함
 -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재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인정관할국가에 해당되지 않아 재보험담보를 100% 제공해야 함
-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금융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미국 재보험모델법 개정 내용에 대한 회의와 의견을 제시하여 2015년부터 인정관할국가로 평가를 받기 시작, 재보험담보 제공에 대한 부담이 축소되었음
 - 일본 보험회사는 신용도가 우량한 경우 재보험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수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유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일본 보험업계는 현재 개정 중인 재보험모델법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국 보험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완화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의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이 금년 하계 NAIC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폐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상과 의견을 NAIC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가 상호관할국가 요건에 해당되도록 논의하고, 인정관할국가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 자료 구비 등의 준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완화가 가능해질 경우 미국 내 우량한 물건의 수재와 보유 확대를 통한 해외 재보험수지 역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1. 검토배경



- 미국의 주 보험감독청은 재보험모델법에 기초하여 주에서 사업하는 보험회사가 해외보험회사에게 출재하는 경우 수재보험회사가 인정관할국가의 승인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이하, 'NAIC')는 인정관할국가 신청 국가의 보험규제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고, 주 보험감독청은 재보험계약의 이행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정보험회사를 지정함
 - 재보험모델법은 2017년 유럽과 체결된 커버드 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재보험담보 폐지와 관련된 조문 도입을 위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일본 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2012년부터 미국 재보험모델법규 개정에 대하여 NAIC와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2015년부터 인정국가가 되었음
 - 감독당국은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에 대해 2018년 4월까지 9차례 회의를 통해 NAIC에 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며,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규정 개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인정국가로 지정된 이후 일본 보험회사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 재보험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미국과 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에 의거, 역외거래(Cross Border)를 통한 재보험 거래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정국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보험회사는 재보험담보를 제공해야 함
 - 2018년부터 NAIC는 미국과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고 동등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재보험담보를 완화하는 규정을 재보험모델법에 도입하는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국가나 재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본고는 일본의 미국 재보험모델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완화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의 미국에 대한 수재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량한 리스크의 보유 확대와 해외 재보험수지 역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미국의 재보험출재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 미국은 해외 출재와 관련하여 자국의 계약자와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NAIC의 재보험모델법 및 규정(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¹⁾, Regulation²⁾)에 근거하여 재보험담보를 규정하고 있음
 - 동 모델법은 주(州) 외에서 사업하는 보험회사와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차등적용규제로 인식되어 영국, 일본 등이 의견을 제시, 2011년에 개정되었고 2018년 유럽과의 보험협상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이전의 재보험모델법은 미국의 보험회사가 주(州) 이외의 보험회사에 출재를 하는 경우 수재사가 아래의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인 경우에만 재보험계약으로 인정하였음
 - 재보험계약은 수재사가 다른 주에 소재하는 재보험회사(Reinsurer Domiciled in Another State)이거나 미국 내에 신탁계정을 통하여 수재하는 계약의 책임준비금 100% 담보를 제공(또는 신용장 개설)하는 해외 재보험회사(Reinsurers Maintaining Trust Funds)인 경우에만 인정됨
 - 그러나 뉴욕 주, 플로리다 주는 동 규제가 차별적인 규제라고 인식하여 다른 주 또는 해외 보험회사가 우량한 신용등급과 재보험 이행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재보험담보를 감액하는 제도를 2010년, 2008년에 각각 도입하였음
- NAIC는 뉴욕 주와 플로리다 주의 취지를 확대하여 2011년에 100% 재보험 담보요건을 완화하는 재보험모델법을 개정함
 - 재보험담보요건 완화를 위해서 해외수재보험회사는 NAIC가 공표한 인정관할국가(Qualified Jurisdiction, 이하, 'QJ')의 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승인재보험회사(Certified Reinsurer)이어야 함
 - 승인재보험회사는 QJ의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 리드 주³⁾의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함
 - 주 보험감독청은 제출받은 수재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 재보험담보감액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

1) <https://www.naic.org/store/free/MDL-785.pdf>

2) <https://www.naic.org/store/free/MDL-786.pdf>

3) NAIC는 주별 보험감독체계임을 감안하여 리드 주(Lead State) 개념을 도입함. 인정국가의 보험회사가 리드 주에서 인가를 받아 인증보험회사가 되면 다른 주의 감독당국은 해당 리드 주의 신청 자료를 참고하여 재보험담보 완화 여부를 승인하는 패스포팅(Passporting)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19년 1월 현재 리드 주는 캘리포니아 주(프랑스, 독일, 일본), 뉴욕 주(영국), 코네티컷 주(스위스), 플로리다 주(버뮤다), 델라웨어 주(아일랜드)가 있음

- 해외 승인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는 재보험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담보율 0%), 기타 등급인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보험담보를 제공해야 함

〈표 1〉 승인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별 재보험담보 비율

등급	재보험 담보율	A.M Best	S&P, Fitch	Moody's
1	0%	A++	AAA	Aaa
2	10%	A+	AA+, AA, AA-	Aa1, Aa2, Aa3
3	20%	A	A+, A	A1, A2
4	50%	A-	A-	A3
5	75%	B++, B+	BBB+, BBB, BBB	Baa1, Baa2, Baa3
6	100%	B 이하	BB+ 이하	Ba1 이하

- QJ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해외재보험회사가 소재한 본점의 감독당국이 보험감독규제의 미국과의 동등성을 평가하여 NAIC에 신청하고, NAIC는 다음 요소를 평가하여 QJ 자격을 5년간 부여함⁴⁾

- NAIC는 신청국가의 금융안정보고서(FASP)⁵⁾, 금융업 국제기준준수보고서(ROSC)⁶⁾ 등에서 공개된 정보에 기초하며 부족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함
- 추가 자료는 ① 법률 및 규제, ② 규제 실무 및 절차, ③ 미국에 본점을 설치한 재보험자에 적용되는 규제, ④ 감독협력 및 정보공유, ⑤ 대상국 재보험자의 실적, ⑥ 미국의 최종판결의 집행에 관한 제한, ⑦ 청산 절차(Solvent Scheme of Arrangement)임⁷⁾
- NAIC는 2015년 1월 버뮤다, 독일, 스위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을 QJ로 평가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유효기간은 2020년까지임⁸⁾

- 최근 5년 동안 QJ 지역 소재 보험회사는 미국 해외출재보험시장에서 84% 내외의 수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6년의 경우 미국은 해외 국가에게 836억 달러의 출재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4%인 703억 달러를 QJ에 출재하였음
- 캡티브가 많은 버뮤다를 제외한 QJ에 대한 출재보험료는 전체 출재보험료의 42.3%에 해당하는 354억 달러이며 최근에 들어 증가하고 있음

4) NAIC(2013), "Process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the NAIC List of Qualified Jurisdictions"

5) FAS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는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제정한 금융부분 평가프로그램으로 특정 국가의 금융안정상황을 평가한 보고서임

6) ROSC(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는 IMF와 세계은행의 기준에 의거하여, 특정국가의 국제 기준 준수상황을 평가한 보고서임

7)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복수의 채무자간 보험채무를 일괄하여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함

8) NAIC(2017), "NAIC List of Qualified Jurisdictions As of January 1"

〈표 2〉 미국 해외출재보험료 중 QJ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해외출재보험료(A)		63,719	67,917	72,506	78,504	83,671
QJ 출재보험료(B)		53,483	57,103	61,008	65,800	70,347
버뮤다 제외 QJ 출재보험료(C)		20,178	21,613	25,581	29,583	35,401
QJ 출재보험료 비중	B/A	83.9	84.1	84.1	83.8	84.1
	C/A	31.7	31.8	35.3	37.7	42.3

자료: Re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2017), Offshore Reinsurance in the U.S market 2016 Data, pp. 6~12

■ 2018년 10월 현재 NAIC는 2017년 유럽과 체결한 커버드 협정(Covered Agreement, 이하, 'CJ')⁹⁾ 이행을 위하여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상호관할구역(Reciprocal Jurisdiction, 이하, 'RJ')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수재보험회사가 RJ에 소재하고 일정요건(최저자본금, 지급능력요건, 보고요건, 재보험금의 신속한 지불이행 등)을 만족한 경우에 재보험출재효과(재보험담보 폐지)를 인정함
 - RJ는 ① 미국과 조약 또는 국제협정(포괄계약 등을 상정)을 맺은 미국이외의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② 일정의 추가요건(미국의 재보험회사에 대한 담보요건과 지점설치요건이 없고, 본사가 미국인 보험그룹은 해당 지역의 그룹감독을 적용받지 않을 것)에 충족해야 함¹⁰⁾
- NAIC는 커버드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고 수정과정을 거치고 있음
 - 의견 수렴의 주요 내용은 장래 커버드 협정 체결국가의 재보험회사에 준한 유사 적용 확대, QJ의 승인재보험회사에 준한 유사 적용 확대, QJ 평가기준의 변경 검토, 미국 출재사에 대한 추가 보호규정 도입(재보험담보폐지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RBC 기준 변경 또는 다른 규제의 도입) 등임
 - NAIC는 두 차례(2018. 6. 21~7. 23¹¹⁾, 2018. 9. 25~10. 16¹²⁾)에 걸쳐 의견을 받고, 수정된 법

9) 본 협정의 제목은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Prudential Measures Regarding Insurance and Reinsurance"임; [https://www.treasury.gov/initiatives/fio/reports-and-notices/Documents/Covered-Agreement-Fact-Sheet-\(011317\)-FINAL.PDF](https://www.treasury.gov/initiatives/fio/reports-and-notices/Documents/Covered-Agreement-Fact-Sheet-(011317)-FINAL.PDF)

10) NAIC, Model#785 Draft 6-21-2018: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 pp. 785-8~785-11

11) 미국기관은 Allstat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Cincinnati Insurance Companies, CNA, Maine 주 감독청, Missouri 주 감독청, 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 Re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이고, QJ는 Association of Bermuda Insurers and Reinsurers, Bermuda International Long Term Insurers and Reinsurers,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Hannover Re, Lloyd's America, SwissRe,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Kroll Bond Rating Agency이었음

12) 미국은 Allstate,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and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 California, Reinsurance Advisory Board, Re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 and Other Trade Associations, Re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 and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이며, QJ는 European Commission, Bermuda International Long Term Insurers and Reinsurers, European

규 개정안이 공표되어 있으며¹³⁾, 2019년 하계회의¹⁴⁾에서 확정될 예정임

3. 일본의 미국 재보험담보 폐지에 대한 협상 경과



■ 일본은 금융청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가 NAIC가 제시하고 있는 재보험모델법에 대한 자국의 의견을 제시하여 왔음¹⁵⁾

- 일본 금융청은 자국 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완화를 위하여 5년간 미국과 논의를 추진하여 왔음
 - 2014년부터는 NAIC와 보험규제체계 및 내용에 대하여 상호이해 및 신뢰의 진전과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보험규제 대화 회의”를 2018년 4월까지 9회 실시하였음¹⁶⁾
 - NAIC가 일본을 QJ로 평가하기 위하여 검토한 자료는 금융안정보고서(FASP), 금융부문 국제기준수 보고서(ROSC) 등 8종류임
- 2015년 1월 일본은 NAIC로부터 재보험모델법상의 QJ로 평가받았으며 향후 2020년까지 5년간 자격이 유지됨
 - 이로 인해 일본 보험회사는 미국의 원보험 계약의 수재비용을 절감하고 우량물건 수재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최근 미국으로부터의 수재보험료(<표 3>의 일본 출재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음

〈표 3〉 미국의 해외 출재보험료 중 일본의 수재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4	2015	2016
미국의 버뮤다 제외 QJ 출재보험료(A)	20,178	25,581	29,583	35,401
일본 출재보험료(B)	294	464	472	480
일본 출재보험료 비중(B/A)	1.5	1.8	1.6	1.4

자료: Re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2017), Offshore Reinsurance in the U.S market 2016 Data, pp. 6~12

Commission,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International Underwriters Association, Kroll Bond Rating Agency, Lloyd's America, Swiss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이었음

13) NAIC, Model#785 Draft 6-21-2018: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 pp. 785-8~785-11;

https://www.naic.org/documents/cmte_e_reinsurance_180925_model_law.pdf?3,

https://www.naic.org/documents/cmte_e_reinsurance_180925_model_regulation.pdf?71

14) NAIC(2018), Reinsurance (E) Task Force(Saturday, November 17, 2018) Meeting Summary Report

15) NAIC(2014), Summary of Findings and Determination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FSA), pp. 1~4

16) 金融庁(2015. 4. 6), 全米保険監督官協会(NAIC) 共同文書; <https://www.fsa.go.jp/inter/etc/20150407-1/01.pdf>

■ 아울러 일본 손해보험업계도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QJ의 선정과 관련한 절차” 마련과 법규의 개정 시에도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왔음

- 2012년 협회는 평가대상국 규제의 동등성 평가를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국가의 재보험회사에 대한 개별 심사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또한 NAIC가 작성중인 동등성평가 절차 기준이 뉴욕 주나 플로리다 주의 담보금액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자기평가보고서 기재요건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FSAP에서 ICP 준수상황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NAIC의 재평가 불요하거나 간소화하고 5년마다 전체를 재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2013년 5월에 제시한 의견에서는 2012년에 제시한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¹⁷⁾에 대해 환영한다는 취지와 함께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다시 제시하였음
 - 동등성평가를 인정받은 경우 해당국가의 재보험회사에 대한 개별심사를 간략히 하고, 뉴욕 주와 플로리다 주의 담보금액제도를 인정받은 보험회사에게 영향이 적게 해야 한다는 점임

■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2018년 미국과 EU 간 체결된 커버드 협정의 실시 방법에 대하여 2018년 7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¹⁸⁾

- 손해보험협회는 재보험모델법 개정에 따른 재보험담보 폐지를 지지하며, 규제의 공평성과 정합성 관점에서 유럽연합국가가 아닌 QJ 재보험사에게도 커버드 협정 체결지역과 같이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요청하였음
 - 또한 인정재보험회사의 심사에 관하여도 EU와 비(非) EU의 QJ 간의 기준을 준용하여 간편하게 적용을 요청함
- 아울러 해외 수재보험회사의 담보제공 완화에 수반하여 QJ 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담보 이외의 또 다른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커버드 협정관련 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¹⁹⁾

- 재보험모델법이 재보험수재와 관련한 QJ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되는 것을 환영함

17) 자기평가보고서에 관한 기재 삭제,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정보는 공표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한정, 평가비용은 NAIC의 부담으로 명기, 평가 시에 임접조사를 선택조항으로 규정, 5년마다 재평가 시에 타당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간략하게 평가함을 규정화, 평가정보의 기밀유지조항 도입임

18) 日本損害保険協会 国際企画部(2018. 7), EU・米国カバードアグリーメント締結を受けた全米保険長官会議(NAIC) による再保険担保の撤廃に向けた検討について, p. 8

19) 日本損害保険協会 国際企画部(2018. 7), EU・米国カバードアグリーメント締結を受けた全米保険長官会議(NAIC) による再保険担保の撤廃に向けた検討について, p. 11

-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본사가 있는 보험그룹에 대하여 미국 감독당국만이 그룹감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없어야 하고 자회사의 소재국가의 그룹감독을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도 없어야 함
- QJ (및 RJ)의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는 과정을 현재보다 더 간략하게 해줄 것을 요청함

4.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의 국내보험회사 적용 가능성 검토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최근 8년간 미국 재보험 출수재 규모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순수지차(출재 수지 차와 수재 수지 차의 합계)는 적자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미국으로부터 3,227억 원을 수재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출재 보험료로 4,165억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순수지차는 277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에 출재하는 보험료는 해외 전체 출재보험료의 8%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국내사의 수재보험료는 2010년 5.5%에서 2017년 13%로 증가하였음(〈부록 표〉 참조)

〈표 4〉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미국 출수재 현황

(단위: 억 원, %)

연도별	수재				출재				순수지차액 (④+⑧)
	수입 보험료①	지급 수수료②	지급 보험금③	수지차④= ①-②-③	지출 보험료⑤	수입 수수료⑥	수입 보험금⑦	수지차⑧= ⑥+⑦-⑤	
2017	3,227	627	1,748	852	4,165	1,172	1,864	-1,129	-277
2016	2,771	488	1,286	998	3,854	1,060	1,900	-894	104
2015	2,232	353	1,287	592	3,674	914	1,675	-1,086	-494
2014	2,414	343	1,202	869	3,300	715	1,623	-962	-92
2013	1,524	294	863	367	2,710	529	1,339	-842	-475
2012	1,284	336	1,288	-340	2,086	535	839	-711	-1,051
2011	1,017	253	506	257	2,341	483	682	-1,176	-918
2010	519	128	408	-17	1,918	361	678	-878	-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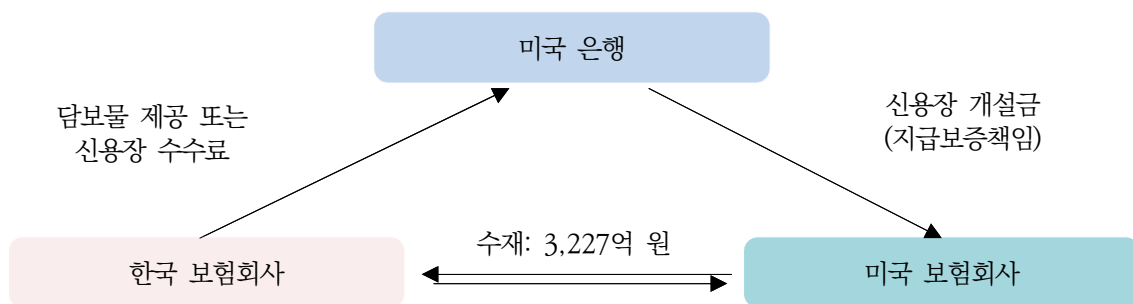
주: 2019. 1. 15 현재 환율 1,120원을 적용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도

■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 소재 물건을 수재할 경우 미국 개별주의 재보험담보 규제를 적용받고, 국내 물건의 미국 출재 시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²⁰⁾을 적용받음

20) 이기형(2011. 12. 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험분야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주간포커스』, 제159호, 보험연구원

-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으로 출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 소재 물건을 수재하는 경우에는 재보험담보를 제공해야 함
 - 2017년 국내보험회사는 3,277억 원을 수재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의 100%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미국 보험회사는 4,165억 원을 담보 없이 국내에서 수재하고 있음
- 다만, 뉴욕 주, 플로리다 주에 소재하는 물건을 수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제공을 감액 받을 수 있음

〈그림 1〉 한국 보험회사의 미국 재보험 수재 구조



■ 국내 보험업계는 NAIC가 QJ를 유지한 상태에서 커버드 협정 이행을 위한 방법으로 “상호관할국가(Reciprocal Jurisdiction)”를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보험회사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NAIC의 재보험모델법과 규정에 대한 조사 분석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주별 적용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내 보험회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거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미국과 상호 동등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RJ에 해당되도록 NAIC와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는 내국민 및 최혜국대우의 원칙(National an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²¹⁾에 기초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위의 원칙에 의거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 거래도 다른 국가와 동등하게 적용받는 것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RJ로 인정받기 위한 논의와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국내보험회사는 미국과 재보험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QJ가 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NAIC와 감독정보교류협의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미국과 한국의 보험감독규제를 상호교환하고 동등한 수준의 감독규제체제임을 평가받아야 함
 - 또한 NAIC가 QJ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금융안정성 보고서 등의 자료는 최근의 감독규제 상황에 부합하게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FASP 2013년²²⁾, ROSC 2014년²³⁾) [kiri](#)

21) 조약당사국의 일방이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한 것과 똑같은 무역기회를 제약상대국에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부록 표〉 손해보험의 미국과 해외 재보험 출수재 규모 및 수지차

(단위: 억 원, %)

구분		수재				출재				순수지차 (④+⑧)
		수입 보험료①	지급 수수료②	지급 보험금③	수지차④= ①-②-③	지출 보험료⑤	수입 수수료⑥	수입 보험금⑦	수지차⑧= ⑥+⑦-⑤	
2010	전체	9,456	2,097	4,469	2,890	22,266	4,094	11,977	-6,194	-3,304
	미국	519	128	408	-17	1,918	361	678	-878	-895
	비중	5.5	6.1	9.1	-0.6	8.6	8.8	5.7	14.2	27.1
2011	전체	12,929	3,158	6,818	2,953	27,453	4,991	15,615	-6,847	-3,894
	미국	1,017	253	506	257	2,341	483	682	-1,176	-918
	비중	7.9	8.0	7.4	8.7	8.5	9.7	4.4	17.2	23.6
2012	전체	14,592	3,460	10,277	855	22,989	5,352	15,362	-2,275	-1,420
	미국	1,284	336	1,288	-340	2,086	535	839	-711	-1,051
	비중	8.8	9.7	12.5	-39.8	9.1	10.0	5.5	31.3	74.0
2013	전체	14,740	3,537	8,055	3,149	29,852	4,439	16,110	-9,304	-6,155
	미국	1,524	294	863	367	2,710	529	1,339	-842	-475
	비중	10.3	8.3	10.7	11.7	9.1	11.9	8.3	9.1	7.7
2014	전체	21,882	4,732	11,007	6,143	42,730	6,774	28,449	-7,507	-1,365
	미국	2,414	343	1,202	869	3,300	715	1,623	-962	-92
	비중	10.2	7.5	11.7	9.6	8.6	13.5	5.9	14.5	36.2
2015	전체	20,189	4,675	10,438	5,075	41,737	6,483	27,192	-8,061	-2,986
	미국	2,232	353	1,287	592	3,674	914	1,675	-1,086	-494
	비중	11.1	7.6	12.3	11.7	8.8	14.1	6.2	13.5	16.5
2016	전체	19,079	4,921	9,645	4,514	39,689	5,572	26,043	-8,073	-3,560
	미국	2,771	488	1,286	998	3,854	1,060	1,900	-894	104
	비중	14.5	9.9	13.3	22.1	9.7	19.0	7.3	11.1	-2.9
2017	전체	24,769	6,031	13,454	5,283	54,638	7,691	32,355	-14,592	-9,309
	미국	3,227	627	1,748	852	4,165	1,172	1,864	-1,129	-277
	비중	13.0	10.4	13.0	16.1	7.6	15.2	5.8	7.7	3.0

주: 2019. 1. 15 현재 환율 1,120원을 적용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도

- 22) IMF(2013. 12. 24), “Republic of Kore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No. 14/126
- 23) Republic of Korea: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16/12/31/Republic-of-Korea-Report-on-the-Observance-of-Standards-and-Codes-41570>)